

2020년도(제31차)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요일) 17:00
- 장소 : 온라인 줌(Zoom) 개최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목 차

1. 제31차 정기총회 회순	01
2. 전차(제30차, 2019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03
3. 조직현황 보고	07
4. 2020년도 사업실적 보고	10
5. 2020년도 편집위원회 사업실적 보고	22
6. 2019년도 12월 결산보고	28
7. 2020년도 결산보고	37
8. 감사보고서	44
9. 2021년도 사업계획(안)	46
10. 2021년도 편집위원회 사업계획(안)	51
11. 2020년도 12월 예산(안)	55
12. 2021년도 예산(안)	63
13. 안건심의	71
14. 정관	73
15. 회장선출규정	82
16. 편집위원회 규정	86
17. 회비 납부 규정	123

제31차 정기총회 회순

제31차 정기총회 회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전차(제30차, 2019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
- 의안심의
 1. 2020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2. 감사보고
 3.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4. 안건심의
- 기타사항
- 폐 회

전차(제30차, 2019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전차(제30차, 2019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17:00

- 장 소 : 부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프라임다목적홀

- 참석자 : 허현미 회장 외 92명

- 회 순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김찬룡(동의대 교수) 총무이사가 재적회원 130명 중 정회원 92명 참석으로 성원보고를 한 후 정관에 의해 허현미(경인여대 교수) 회장이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였음.

2. 국민의례

참석회원 일동.

3. 개 회 사

허현미 회장이 제30차 정기총회 개회 인사를 하였음.

4. 전차(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

전차 정기총회에 대한 회의록을 총무이사가 낭독하고 원안대로 접수함.

5. 의안심의

- 가. 2019년도 사업실적 심의

김찬룡 총무이사가 2019년도 사업총괄표와 6건의 학술행사, 3번의 상임이사회, 1번의 정기이사회, 학회지 4회 출판 및 간행 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사항이 있는지 회원들에게 질문함. 이후 회원들이 원안대로 접수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접수되고, 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나. 2019년도 편집위원회 사업실적 심의

김양례 편집위원장이 4회의 학회지발간과 회의에 대해 보고를 함. 총 37편중 24편이 게재되어 게재율 68.65%임을 보고 하였음. 2019년 편집위원회 사업실적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는지를 회원들에게 묻고 동의와 재청을 얻어 원안대로 접수함.

다. 2019년도 세입·세출 심의

김찬룡 총무이사의 사업보고 이전에 이원미 감사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해 보고함. 이원미 감사와 김옥현 감사가 이수연 사무국장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였음. 이후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됨.

라. 2020년 사업계획(안) 심의

김찬룡 총무이사가 2020년 사업계획안에 대해 보고함.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함.

마. 2020년 편집위원회 사업계획(안) 심의

김양례 편집위원장이 2020년 편집위원회 사업계획(안)에 대해 보고함.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함.

바.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이러 김찬룡 총무이사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함. 이후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 질문함. 회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원안대로 통과됨.

6. 안건심의

가. 학회지 투고규정 개정의 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요청으로 제7조 논문투고 내용 중 ‘저자’를 ‘연구자’로 명칭 변경하며, ‘저자명, 소속 기관, 교신저자 등’을 ‘연구자의 소속, 직위 등’으로 개정함을 김양례 편집위원장이 보고함. 회원들이 동의하고 재청하여 원안대로 통과됨.

나. 감사선출

김찬룡 총무이사가 이원미 감사의 임기만료로 신규 감사 1인 선출을 의안으로 상정함. 김옥현(건국대) 감사가 김소라 박사(경북대)를 추천함. 허현미 회장이 이 안에 대한 재청 여부를 물었으며, 참석회원 전원이 찬성하여 박수로 가결함.

다. 신입이사 임명

허현미 회장이 신규리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와 맹이섭 박사(한양대)를 신입이사로 추천하여 이사회를 통과하였음을 회원들에게 보고함.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원안대로 통과함.

7. 폐회

허현미 회장이 의안심의에 추가 기타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다른 의견이 없다는 회원들의 응답에 폐회를 선언함.

2019년 11월 29일

회의록 작성자 총무이사 김 찬 룡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감 사 이 원 미



김 옥 현



조직현황 보고

1. 임원 현황
2. 회원 현황

1. 임원 현황

※ 직위별 가나다 순

회장	허현미 경인여자대학교			
부회장(8명)	권민혁 단국대학교	김재운 경인교육대학교	이정래 경북대학교	
	권순용 서울대학교	서희진 건국대학교	이흥구 경기대학교	
	이은석 가천대학교	정영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상임이사(7명)	총무: 김찬룡 동의대학교	학술: 남상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조직: 임봉우 단국대학교	사업: 김경오 경일대학교
	홍보: 홍미화 단국대학교	국제: 장의영 한국체육대학교	기획: 김 준 전남대학교	
이사(59명)	고은하 인천대학교	김인형 신라대학교	박형길 서울대학교	임새미 부산대학교
	공성배 용인대학교	김종호 울산대학교	서원재 을지대학교	임승엽 고려대학교
	권구명 대구한의대학교	김지선 부산대학교	신규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임우택 성신여자대학교
	권기남 경북대학교	김진영 장안대학교	신석민 경남대학교	장승현 부산대학교
	권현수 용인대학교	김한주 서울여자대학교	안찬우 대구한의대학교	전태준 서원대학교
	김경식 호서대학교	김혜자 이화여자대학교	여정권 충남대학교	정수호 인제대학교
	김기섭 경희대학교	김홍남 조선대학교	오연수 단국대학교	정인화 세종대학교
	김 민 건국대학교	김홍설 배재대학교	이근모 부산대학교	조옥연 국민대학교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승구 한국체육대학교	이루지 성균관대학교	채관석 공군사관학교
	김영재 중앙대학교	민병석 단국대학교	이명선 고려대학교	최미란 한국체육대학교
	김영미 서원대학교	맹이섭 한양대학교	이상행 전주대학교	한승백 한림대학교
	김옥주 조선대학교	박보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승희 서원대학교	한준영 영남대학교
	김용은 호남대학교	박순문 호남대학교	이원희 경일대학교	한태룡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우석 중부대학교	박재우 한양대학교	이재형 한국해양대학교	함은주 연세대학교
	김우성 인하대학교	박창범 상지대학교	이혁기 경남대학교	
	감사	김옥현 건국대학교		김소라 경북대학교
사무국	이수연 이화여자대학교	이보나 이화여자대학교	김대희 충남대학교	

2. 회원 현황

2020년도 등록여부	회원 구분	인원(명)	회 비	
등 록	임 원	고 문	11	찬조금
		자문위원	6	찬조금
		회 장	1	100만원
		부 회 장	9	50만원
		상임이사	7	20만원
		이 사	55	20만원
		감 사	2	찬조금
	일반회원	정회원	26	5만원
		준회원	0	1만원
		신규 정회원	16	6만원
		신규 준회원	0	2만원
	단체(기관) 회원		0	20만원
	소 계	등록회원 133명		
	미등록	일반회원	일반회원 2,503명	
총 계	회 원 2,636명			

2020년도 사업실적 보고

1. 사업 총괄표
2. 주요 업무처리 사항
3. 학술행사 사항
4. 회의 사항
5. 출판 및 간행 사항
6. 기부금 및 지원금 명세

1. 사업 총괄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개요	장 소	비 고	
학술행사	1. 2019년도 정기학술대회		2019.11.29.(금)	동의대학교		
	2.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하계워크숍		2020.08.21(금) ~ 08.22(토)	(1일차 온라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B1 컨벤션 오디토리움 (2일차 온라인) 한국체육대학교	1박2일 개최	
	3. 제58회 한국체육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2020.10.22.(목) ~ 10.23.(금)	온라인 개최	한국체육학회 주관	
	4. ISSA국제스포츠사회학회		2020.10.07.(목) ~ 10.15.(금)	온라인 개최	ISSA주관	
	5. 2020 스포츠정책 포럼		2020.11.26.(목) ~ 11.28(토)	온라인 중계 (올림픽파크텔)	한국체육학회 주관	
	6.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2020.11.27(금)	온라인 개최		
	7. 국가인원위원회 스포츠정책 심포지움		2020.12.09.(수)	온라인 중계 (서울로얄호텔)	한국체육학회 주관	
	8.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심포지움		2020.12.10.(목)	(온라인 중계) 롯데월드타워 스카이B1 컨벤션 오디토리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주관	
회 의	1. 제30차 정기총회		2019.11.29.(금)	서울대학교		
	2. 상임이사회		1차 : 2020.04.27.(월)	온라인 화상 회의		
	3. 정기이사회			1차 : 2020.07.22.(수)	온라인 화상 회의	
				2차 : 2020.09.25.(금)	온라인 화상 회의	
				3차 : 2020.11.13.(금)	온라인 화상 회의	
				4차 : 2020.11.27.(금)	온라인 화상 회의	
	4. 편집위원회	2019년도 제8차 편집위원회 2020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2020년도 제2차 편집위원회 2020년도 제3차 편집위원회 2020년도 제4차 편집위원회 2020년도 제5차 편집위원회 2020년도 제6차 편집위원회 2020년도 제7차 편집위원회	2019.12.24.(화) 2020.01.17.(금) 2020.03.20.(금) 2020.06.18.(목) 2020.08.24.(월) 2020.10.08.(목) 2020.10.22.(목) 2020.11.12.(목)	온라인 회의 아노 (서울역) 온라인 회의 온라인 회의 온라인 회의 온라인 회의 온라인 회의 온라인 회의		
	출판·간행	1. 학회지	제32권 제4호 : 2019. 12. 31(화) 제33권 제1호 : 2020. 03. 31(화) 제33권 제2호 : 2020. 06. 30(화) 제33권 제3호 : 2020. 09. 30(수)			

2. 주요 업무처리 사항

국내외 문서수발

(1) 국내문서 접수	6회	(2) 국내문서 발송	12회
(3) 간행물 접수	4회	(4) 간행물 발송	4회
(5) 전자문서 접수	130회	(6) 전자문서 발송	150회

3. 학술행사 사항

1) 2019년도 정기학술대회

- ▷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13:00 ~ 18:00
- ▷ 장 소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과 1층 프라임다목적홀
- ▷ 주 제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스포츠관광
- ▷ 주최·주관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 후 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 동의대학교 링크사업단 / 부산관광공사 / 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 ▷ 발표논문 수 : 7편
- ▷ 참석자 수 : 약 100명
- ▷ 발표자 및 발표내용
 - 발 제 1: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스포츠관광의 연구동향 규명 (김경식 교수, 호서대학교)
 - 발 제 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해양 레저관광의 역할 (최도석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 발 제 3: 21세기 관광산업: 욕망, 트렌드, 테크놀로지의 공간 (정희준 사장, 부산관광공사)
 - 발 제 4: SNS 관련 미디어 이론 및 방법론 탐색을 통한 스포츠사회학 연구영역 확장 (김기운 박사, 건국대학교)
 - 발 제 5: 해외 진출 선수의 국가대표 차출에 대한 신문보도의 함축적 의미분석: SON에서 손흥민 (김용은 박사, 전남대학교)
 - 발 제 6: 한국사회의 스포츠 소비 트렌드 2019 (변지섭 박사, 경기대학교)
 - 발 제 7: 야만의 스포츠, 전 세계로 번지는 재앙 (장승현 박사, 부산대학교)
 - 사회자: 김찬룡 교수 (동의대학교)
 - 좌 장: 남상우 박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하계워크숍

- ▷ 일 시 : (제1일차) 2020년 08월 21일(금) 13:00 ~ 17:30 / (제2일차) 2019년 06월 29일(토) 09:30 ~ 12:30
- ▷ 장 소 : (제1일차)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 오디토리움/ (제2일차)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세미나실
- ▷ 주 제 : (30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30년: 새로운 지평과 도전/ (하계세미나)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차세대를 위한 하계워크숍
- ▷ 주최·주관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 ▷ 후 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 발표논문수 : 6편
- ▷ 참석자 수 : (제1일차) 총 90여명 / (제2일차) 총 50여명
- ▷ 3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제자 및 발표내용
 - 발 제 1: 글로벌-로컬 관점에서 본 스포츠사회학의 비전과 성찰 (권순용 교수, 서울대학교)
 - 발 제 2: 한국스포츠사회학의 지적구조 규명: 융·복합적 접근 (김경식 교수, 호서대학교)
 - 발 제 3: 포스트코로나 사회,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사회학 (남상우 박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발 제 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스포츠사회학의 도전과 가능성 (임새미 박사, 부산대학교)
- ▷ 종합토론
 - 토 론 1: 고은하 박사(인천대학교)
 - 토 론 2: 김양례 박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토 론 3: 장익영 교수(한국체육대학교)
 - 토 론 4: 이은석 교수(가천대학교)
- ▷ 하계워크숍 발제자 및 발표내용
 - 발 제 1: 좋은 스포츠사회학 글쓰기 노하우: 연구주제 잡기와 논리적 글쓰기 (박보현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 발 제 2: 국제학술지 입문전략: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장익영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4. 회의 사항

1) 2019년도 제30차 정기총회

- ▷ 일 시 : 2020.11.29.(금) 오후 17:00 ~ 18:00
- ▷ 장 소 : 동의대학교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92명
- ▷ 회의내용 :
 - ① 개회선언 : 김찬룡 (총무이사)
 - ② 개 회 사 : 허현미 (회장)
 - ③ 전차(2018년도)회의록 접수
 - ④ 의안심의
 - 2019년도 사업실적 심의
 - 2019년도 편집위원회 사업실적 심의
 - 2019년도 예산·결산 심의
 - 감사보고
 - 2020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2020년도 편집위원회 사업계획(안) 심의
 - 2020년도 예산·결산(안) 심의
 - ⑤ 안전심의
 - 학회지 투고규정 개정의 건
 - 감사선출
 - 신입이사 임명

2) 이사회

(1) 2020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 ▷ 일 시 : 2020년 04월 27일(월) 오전 11시 ~ 12:30
-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 ▷ 참석자 : 회장 외 9명

- ▷ 보고 및 심의사항
 - ① 2020년도 임원단 임면의 건
 - ② 2020년도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최 일정의 건
 - ③ 2020년도 하반기 학회 사업 일정 변경의 건
 - ④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2) 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20년 07월 22일(수) 오후 15:00 ~ 16:30
-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 ▷ 참석자 : 회장 및 부회장, 이사, 사무국(2명) 총 38명
- ▷ 보고 및 심의사항
 - ① 회의 개최의 건
 - ②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 ③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최의 건
 - ④ 하반기 사업 일정 변경의 건
 - ⑤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⑥ 임원 회비 납부의 건
 - ⑦ 임원단 임면의 건

(3) 2020년 제2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20년 09월 25일(금) 오전 10:00 ~ 11:00
-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 ▷ 참석자 : 회장 및 부회장, 이사, 사무국(2명) 총 39명
- ▷ 보고 및 심의사항
 - ①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하계워크숍 온라인 개최 경과보고의 건
 - ②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KUSF) 프로젝트 계약 체결의 건
 - ③ 2021년도 차기 학회장선출의 건
 - ④ 2020년도 하반기 사업 일정의 건

(3) 2020년 제3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20년 11월 13일(금) 오전 10:00 ~ 11:30
-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 ▷ 참석자 : 회장 및 부회장, 이사, 사무국(2명) 총 49명
- ▷ 보고 및 심의사항
 - ① 선거관리위원회 경과보고
 - ② 학회장 후보 소견 발표
 - ③ 선출규정 및 선출방법
 - ④ 개표 및 결과 발표
 - ⑤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⑥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결과
 - ⑦ 2020년도 우수논문상 심사 결과
 - ⑧ 2020년도 하반기 행사 일정
 - ⑨ 본 학회 법인화 필요성 여부의 건

3) 3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0.01.06.(금) 오후 18:00
- ▷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준비위원회 6명
- ▷ 회의내용 :
 - ① 행사 일정 및 개최장소의 건
 - ② 행사 계획의 건
 - ③ 예산 편성의 건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0.01.17.(금) 오후 17:30
- ▷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준비위원회 6명, 사무국
- ▷ 회의내용 :

- ① 주제 선정의 건
- ② 세부 행사 계획의 건
- ③ 연구재단 학술대회지원 사업의 건

(3)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0.02.12.(수) 오후 17:30
- ▷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준비위원회 6명
- ▷ 회의내용 :
 - ① 세부 행사 계획의 건
 - ② 현안 업무 분담의 건
 - ③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4) 제4차 회의

- ▷ 일 시 : 2020.03.05.(목) 오후 18:00
- ▷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준비위원회 6명, 사무국
- ▷ 회의내용 :
 - ① 세부 행사 계획안 검토 및 수정의 건
 - ② 연구재단 학술대회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의 건
 - ③ 조직위원회 업무분담의 건

4) 3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0.06.01.(월) 오후 21:00
-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조직위원, 사무국
- ▷ 회의내용 :
 - ① 30주년 행사 일정 및 행사 계획 논의의 건
 - ② 30주년 자료집 제작의 건
 - ③ 예산확보의 건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0.06.12.(금) 오전 10:30
-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조직위원, 사무국
- ▷ 회의내용 :
 - ① 30주년 책자 제작 개요(안) 논의의 건
 - ② 자료집 회원 동정 자료 수집의 건
 - ③ 행사 개최 장소 변경의 건
 - ④ 재원 조달 계획의 건

(3)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0.07.06.(월) 오후 21:00
- ▷ 장 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조직위원, 사무국
- ▷ 회의내용 :
 - ①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장소 및 일정 변경의 건

5) 고문단 회의

- ▷ 일 시 : 2020.06.24.(수) 오후 12:30
- ▷ 장 소 : 필경재(한식당), 서울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전임 회장단, 사무국
- ▷ 회의내용 :
 - ① 30주년 기념행사 안내
 - ② 인터뷰 동영상 촬영

6) 부회장단 회의

- ▷ 일 시 : 2020.06.26.(금) ~ 06.27(토) 오후 13:00
- ▷ 장 소 :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 ▷ 참석회원 : 허현미 회장 외 부회장단, 사무국
- ▷ 회의내용 :
 - ① 30주년 기념행사 안내
 - ② 행사 준비의 건

5. 출판 및 간행 사항

1) 학술대회 자료집

- (1) 2019년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9년 11월 29일 발간) : 118 쪽
- (2) 2020년도 창립 30주년 기념 및 하계워크숍 자료집 (2020년 08월 21일 발간) : 249 쪽
- (3)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20년 11월 27일 발간) : 94 쪽

총 461 쪽

2) 학회지 발간

- (1) 제32권 제4호 (2019년 12월 31일 발간) : 60 쪽
- (2) 제33권 제1호 (2020년 03월 31일 발간) : 76 쪽
- (3) 제33권 제2호 (2020년 06월 30일 발간) : 89 쪽
- (4) 제33권 제3호 (2020년 09월 30일 발간) : 115 쪽

총 340 쪽

6. 기부금 및 지원금 명세

(기간: 2019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27일 / 단위 : 원)

성 명/ 기 관	소 속	금 액	비고
조재기 이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5,000,000	
정영린 원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5,000,000	
임변장, 김양중, 김숙자, 김범식 이종영, 윤이중, 강신욱, 임수원, 구창모, 남재화, 박진경 고문	본 학회 고문단(11명)	11,000,000	
허현미 회장	학회장	3,000,000	
권민혁, 권순용, 김재운, 서희진, 이은석, 이정래, 이흥구	부회장단(7명)	3,500,000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하계 워크숍
김우성	이사	1,000,000	
김영미	이사	300,000	
김양례	이사	300,000	
채관석	이사	100,000	
존 로이 교수	전 로드아일랜드대학 교수	(USD 1,000) 1,163,000	
민선홍 대표	레인보우북스	1,000,000	
조재기 이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2,000,000	2020 정기 학술대회
합 계		33,363,000	

2020년도 편집위원회 사업실적 보고

1. 편집위원회 구성
2. 편집위원회 회의 사항
3. 학회지 발간 사항

1. 편집위원회 구성

(가나다 순)

직 위	성 명	소 속	재 임 기 간	비 고
편집위원장	김 양 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9. 1. 1 - 현재	신임
편집위원	권 민 혁	단국대학교	2019. 1. 1 - 현재	신임
	김 경 임	보스턴대학교	2019. 1. 1 - 현재	신임
	김 인 형	신라대학교	2017. 1. 1 - 현재	연임
	박 재 우	한양대학교	2019. 1. 1 - 현재	신임
	이 정 래	경북대학교	2017. 1. 1 - 현재	연임
	임 승 업	고려대학교	2017. 1. 1 - 현재	연임
	조 옥 연	국민대학교	2015. 1. 1 - 현재	연임
편집간사	이 보 나	이화여자대학교	2019. 1. 1 - 현재	신임

2. 편집위원회 회의 사항

1) 2019년도 제8차 편집위원회

- ▷ 일 시 : 12월 24일(화)
- ▷ 장 소 : 온라인
- ▷ 참석자 : 김양례 편집위원장 외 7명
- ▷ 회의 내용
 - ① 제32권 4호 심사 진행 상황 검토
 - ② 제32권 4호 투고논문 심사 결과 및 게재가 논문 확인
 - ③ 2020년 편집위원회 일정 논의
 - ④ 기타안건

2) 2020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 ▷ 일 시 : 01월 17일(금)
- ▷ 장 소 : 아노 (서울역 인근)
- ▷ 참석자 : 김양례 편집위원장 외 4명
- ▷ 회의 내용
 - ① 제33권 1호 심사진행상황 검토
 - ② 2020년 편집위원회 운영 방안 검토
 - ③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예정 및 검토
 - ④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논의
 - ⑤ 기타 안건

3) 2020년도 제2차 편집위원회

- ▷ 일 시 : 03월 20일(금)
- ▷ 장 소 : 온라인
- ▷ 참석자 : 김양례 편집위원장 외 7명
- ▷ 회의 내용

- ① 제33권 1호 심사진행상황 검토
- ② 제33권 1호 투고논문 심사결과 및 게재가 논문 확인
- ③ 제33권 1호 이의신청 검토
- ④ 기타 안건

4) 2020년도 제3차 편집위원회

- ▷ 일 시 : 06월 18일(목)
- ▷ 장 소 : 온라인
- ▷ 참석자 : 김양례 편집위원장 외 7명
- ▷ 회의 내용
 - ① 제33권 2호 심사진행상황 검토
 - ② 제33권 2호 투고논문 심사결과 및 게재가 논문 확인
 - ③ 제33권 2호 이의신청 검토
 - ④ 기타 안건

5) 2020년도 제4차 편집위원회

- ▷ 일 시 : 08월 24일(월)
- ▷ 장 소 : 온라인
- ▷ 참석자 : 김양례 편집위원장 외 5명
- ▷ 회의 내용
 - ① 제33권 3호 심사진행상황 검토
 - ② 제33권 3호 이의신청 검토
 - ③ 기타 안건

6) 2020년도 제5차 편집위원회

- ▷ 일 시 : 10월 08일(목)
- ▷ 장 소 : 온라인
- ▷ 참석자 : 김양례 편집위원장 외 7명
- ▷ 회의 내용
 - ① 제33권 4호 심사진행상황 검토

- ② 우수논문상 추천건 검토
- ③ 기타 안건

7) 2020년도 제6차 편집위원회

- ▷ 일 시 : 10월 22일(목)
- ▷ 장 소 : 온라인
- ▷ 참석자 : 김양례 편집위원장 외 4명
- ▷ 회의 내용
 - ① 2019 우수논문상 심사 및 논의
 - ② 2020 우수논문상 심사 및 논의
 - ③ 기타 안건

8) 2020년도 제7차 편집위원회

- ▷ 일 시 : 11월 12일(목)
- ▷ 장 소 : 온라인
- ▷ 참석자 : 김양례 편집위원장 외 7명
- ▷ 회의 내용
 - ①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결과 검토
 - ② 제8차 편집위원회 회의 일정 논의
 - ③ 기타 안건

3. 학회지 발간 사항

▷ 제32권 제4호 (2019년 12월 31일 발간)

- 7편 투고 논문 중 ‘게재 가’ 3편, ‘게재 불가’ 4편 (게재율 42.8%)

▷ 제33권 제1호 (2020년 03월 31일 발간)

- 8편 투고 논문 중 ‘게재 가’ 4편, ‘게재 불가’ 4편 (게재율 50.0%)

▷ 제33권 제2호 (2020년 06월 30일 발간)

- 6편 투고 논문 중 ‘게재 가’ 5편, ‘게재 불가’ 1편 (게재율 83.3%)

▷ 제33권 제3호 (2020년 09월 30일 발간)

- 10편 투고 논문 중 ‘게재 가’ 6편, ‘게재 불가’ 4편 (게재율 60.0%)

2019년도 12월 결산보고

1. 세입 · 세출 총괄표
2. 세 입 결 산
3. 세 출 결 산

2019년도 12월 추가 결산보고 (2019.11.29.~2019.12.31.)

1. 세입 · 세출 총괄표

2019년 11월 29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원)

세	입	세	출
전기이월금	282,199	세출 총액	13,837,830
세입 총액	13,650,766	차기이월금	95,135
계	13,932,965	계	13,932,965

2. 세입결산

(단위 : 원)

관	항목		2019년 12월 예산액 (1)	2019년 12월 결산액 (2)	결산 증감액 (2) - (1)	산출내역		비고
						항목	금액	
회비	회원회비	통상회비	-	-	-	-	-	
		신입회비	-	-	-	-	-	
	임원회비	회장단	500,000	500,000	-	0	• 부회장 1인 × 500,000	500,000
		이 사	2,200,000	200,000	▽	2,000,000	• 이 사 1인 × 200,000	200,000
소 계			2,700,000	700,000	▽	2,000,000		700,000
수익 자부담금	참가비	동계워크숍	-	-	-	-	-	-
		하계특별세미나	-	-	-	-	-	-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	-	-	-	-	-	-
		전국체전기념 학술발표회	-	-	-	-	-	-
		정기학술대회	1,200,000	1,240,000	▲	40,000	• 등록 62인 × 20,000	1,240,000
소 계			1,200,000	1,240,000	▲	40,000		1,240,000

[계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예산액	2019년 12월 결산액	결산 증감액 (2) - (1)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수익 자부담 금	논문심사 및 계재료	제32권 제4호	-	620,000	▲ 620,000	• 계재료 3편	620,000		
		제33권 제1호	200,000	400,000	▲ 200,000	• 심사료 8편 × 50,000	400,000		
		제33권 제2호	-	-	- -	-	-	-	
		제33권 제3호	-	-	- -	-	-	-	
		제33권 제4호	-	-	- -	-	-	-	
소 계			200,000	1,020,000	▲ 820,000		1,020,000		
기부 금 및 기타	기부금	찬조금	1,200,000	1,690,000	▲ 490,000	• 학회발전금 기금(무기명) 1인 × 300,000 • 연말총년회 식사비 회장 1인 × 590,000 • 연말총년회 임원 찬조금 8인 × 100,000 (권순용 부회장김경식, 김용두, 박창범, 장익영, 조옥연, 채관석, 한승백 이사)	300,000 590,000 800,000		
		지원 금	국민체육 진흥공단	4,000,000	4,000,000	- -	• 2019 정기학술대회 광고비	4,000,000	
			동의대학교 링크사업단	2,500,000	2,500,000	- -	• 2019 정기학술대회 지원비	2,500,000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원	1,000,000	1,000,000	- -	• 2019 정기학술대회 지원비	1,000,000	
			부산관광공사	1,500,000	1,500,000	- -	• 2019 정기학술대회 지원비	1,500,000	
소 계			10,200,000	10,690,000	▲ 490,000		10,690,00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예산액	2019년 12월 결산액	결산 증감액 (2) - (1)	산 출 내 역		비고
						항 목	금 액	
	기타	결산이자	700	766	▲ 66	●결산이자	766	
	소 계		700	766	▲ 66		766	
	합 계		14,300,700	13,650,766	▽ 649,934		13,650,766	
	전 기 이 월 금		282,199	282,199	-		282,199	
	계		14,582,899	13,932,965	▽ 649,934		13,932,965	

3. 세출결산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예산액	2019년 12월 결산액	결산 증감액 (2) - (1)	산 출 내 역		비 고
						항 목	금 액	
관 리 비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관리비	3,500,000	3,500,000	-	-	•인건비 •운영비	3,500,000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	-	-	-	-	•사무용품비 •프린터 토너 및 인쇄비 •기타	-
	발송비	간행물 및 우편물	50,000	50,000	-	-	•우편물 및 자료집 •택배발송비용 •기타	50,000
	통신비	전화료 및 메일발송	189,910	189,910	-	-	•전화기 설치 및 사용료	189,910
	유지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60,000	660,000	-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유지보수비	660,000
소 계			4,399,910	4,399,910	-	-		4,399,910
사 업 비	회의비	정기총회	300,000	-	▽	300,000	-	-
		임시총회	-	-	-	-	-	-
		이 사 회	500,000	400,000	▽	400,000	•회의자료 및 식비	400,000
		기타회의	-	-	-	-	-	-
소 계			800,000	400,000	▽	400,000		500,00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예산액	2019년 12월 결산액	결산 증감액 (2) - (1)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사업비	편집 위원회	회의비	2,200,000	1,280,000	▽	920,000	● 정기회의	1,280,000	
		심사료	210,000	-	▽	210,000	-	-	
	소 계		2,410,000	1,280,000	▽	1,130,000		1,280,000	
	출판 및 발간비	학 회 지	32권 제1호	-	-	-	-	● 발간비	-
			32권 제2호	-	-	-	-	● 발간비	-
			32권 제3호	-	-	-	-	● 발간비	-
			32권 제4호	500,000	-	▽	50,000	● 발간비	-
	소 계		500,000	-	▽	50,000			
	소모임 연구회	소모임 연구회 지원	-	-	-	-	-	-	
	소 계		-	-	-	-		-	
	행사비	동계워크숍		-	-	-	-	-	-
		하계특별세미나		-	-	-	-	-	-
		국제 스포츠과학 학술대회		-	-	-	-	-	-
		전국체전기념 학술발표회		-	-	-	-	-	-
		2019년도 정기학술대회		4,600,000	7,457,920	▲	2,857,920	● 자료집 ● 강연료 ● 광고 현수막, 공로패 제작 ● 준비 및 운영비 ● 간식 및 식비	1,570,000 900,000 772,520 500,000 3,715,400
소 계		4,600,000	7,457,920	▲	2,857,920		7,457,92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예산액	2019년 12월 결산액	결산 증감액 (2) - (1)	산 출 내 역		비고
						항 목	금 액	
기 타	판공비		600,000	300,000	▽ 300,000	• 각종 회환	300,000	
	기타잡비		-	-	- -	-	-	
소 계			600,000	300,000	▽ 300,000		300,000	
합 계			13,309,910	13,837,830	▲ 527,920		13,837,830	
차기 이월금			1,272,989	95,135	▽ 1,177,854		95,135	
계			14,582,899	13,932,965	▽ 649,934		13,932,965	

2020년도 결산보고

1. 세입 · 세출 총괄표
2. 세 입 결 산
3. 세 출 결 산

1. 2020년도 결산보고 (2020.01.01. ~ 2020.11.27.)

1.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 원)

세	입	세	출
전기이월금	95,135	세출 총액	66,471,740
세입 총액	68,151,398	차기이월금	1,774,793
계	68,246,533	계	68,246,533

2. 세입결산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예산액 (1)	2020년 결산액 (2)	결산 증감액 (2) - (1)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회비	회원회비	통상회비	3,200,000	1,300,000	▽ 1,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회원 26인 × 50,000 ●준회원 0인 × 10,000 	1,300,000 0		
		신입회비	2,200,000	960,000	▽ 1,2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회원 16인 × 60,000 ●준회원 0인 × 20,000 	960,000 0		
	임원회비	회장단	5,500,000	5,000,000	▽ 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 장 1인 × 1,000,000 ●부회장 8인 × 500,000 	1,000,000 4,000,000		
		이 사	14,000,000	12,000,000	▽ 2,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사 60인 × 200,000 	12,000,000	6인 미납	
	소 계		24,900,000	19,260,000	▽ 5,640,000		19,260,000		
수익 자부담금	참가비	동계워크숍	1,400,000	-	-	-	-	-	코로나 19로 잠정 연기
		특별세미나	1,400,000	-	-	-	-	-	
		하계워크숍	1,400,000	-	-	-	-	-	30주년 기념학술대회와 동시 개최
		제58회 한국 체육학회(온라인) 학술대회	1,600,000	320,000	▽ 1,2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 26인 무료 ●발표자 16인 × 20,000 	320,000	한국체육학회 참가비 이관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하계워크숍	5,000,000	-	-	-	-	-	온라인 개최
		정기학술대회	2,000,000	-	-	-	-	-	온라인 개최
	소 계		12,800,000	320,000	▽ 12,480,000		320,00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예산액 (1)	2020년 결산액 (2)	결산 증감액 (2) - (1))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수익자 부담금	논문심사 및 게재료	제32권 제4호	700,000	-	▽ 700,000	•게재료 0편	-	
		제33권 제1호	1,300,000	670,000	▽ 630,000	•게재료 4편	670,000	
		제33권 제2호	1,300,000	1,030,000	▽ 270,000	•심사료 6편 × 50,000 •게재료 5편	300,000 730,000	
		제33권 제3호	1,300,000	1,470,000	▲ 170,000	•심사료 10편 × 50,000 •게재료 6편	500,000 970,000	
		제33권 제4호	600,000	350,000	▽ 250,000	•심사료 7편 × 50,000	350,000	
	소 계		5,200,000	3,520,000	▽ 1,680,000		3,520,000	
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고문단	5,000,000	21,363,000	▲ 16,363,000	•고문 11명	11,000,000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 11명	8,200,000	
		기타 찬조금				•해외학자 존 로이 •레인보우북스 대표	1,163,000 1,000,000	
	지원금	국민체육진흥공단	35,000,000	12,000,000	▽ 23,000,000	•30주년기념학술대회 및 하계세미나 광고비	5,000,000	
						•정기학술대회 광고비	2,000,000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지원	5,000,000	
	소 계		40,000,000	33,363,000	▽ 6,637,000		33,363,000	

[계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예산액 (1)	2020년 결산액 (2)	결산 증감액 (2) - (1)	산 출 내 역		비고
						항 목	금 액	
	기타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 연구용역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결산이자	8,000	5,895	▽ 2,105	●결산이자	5,895	
		누리미디어	4,500,000	1,682,503	▽ 2,817,497	●누리미디어 저작권료	1,682,503	
		소 계	4,508,000	11,688,398	▽ 7,180,398		11,688,398	
	합 계		87,408,000	68,151,398	▽ 19,256,602		68,151,398	
	전기 이월금		1,272,989	95,135	▽ 1,177,854		95,135	
	계		88,680,989	68,246,533	20,434,456		68,246,533	

3. 세출결산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예산액(1)	2020년 결산액(2)	결산 증감액 (2) - (1)	산 출 내 역		비 고
						항 목	금 액	
관 리 비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관리비	12,000,000	11,000,000	▽ 1,000,000	•인건비 •운영비	11,000,000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	500,000	-	▽ 500,000	•프린터 토너 및 인쇄비 •기타	-	
	발송비	우편물	50,000	150,300	▽ 100,300	•택배, 우편물(국내외) •기타	150,300	
	통신비	전화료 및 메일발송	300,000	226,000	▽ 74,000	•문자발송비용 •전화 이용료 •클라우드 이용료(드랍박스)	50,000 98,000 78,000	
	유지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310,000	650,000	▽ 1,660,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50,000	
	소 계			15,160,000	12,026,300	▽ 3,133,700		12,026,300
사 업 비	회의비	상임이사회	1,000,000	110,000	▽ 890,000	•1차 상임이사회	110,000	
		이사회	2,000,000	1,075,750	▽ 924,250	•1차 이사회 •2차 이사회 •3차 이사회	687,800 330,200 57,750	
		30주년 기념행사	1,000,000	1,349,900	▲ 349,900	•1~4차 준비위원회 •1~3차 조직 위원회	689,700 660,200	
		기타회의	1,000,000	1,770,000	▲ 770,000	•고문단 모임 •부회장단 모임	770,000 1,000,000	
	소 계			5,000,000	4,305,650	▽ 694,350		4,305,65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예산액 (1)	2020년 결산액 (2)	결산 증감액 (2) - (1)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사업비	편집 위원회	회의비	1,920,000	252,500	▽ 1,667,500	• 정기회의	252,500		
		심사료	1,350,000	1,002,500	▽ 347,500	• 논문심사료	1,002,500		
		기타	200,000	-	▽ 200,000	-	-		
	소 계		3,470,000	1,255,000	▽ 2,215,000		1,255,000		
	출판 및 발간비	학 회 지	32권 제4호	500,000	308,500	▽ 191,500	• 전자저널발간 • 편집비	110,500 198,000	
			33권 제1호	500,000	353,500	▽ 146,500	• 전자저널발간 • 편집비	110,500 243,000	
			33권 제2호	500,000	395,500	▽ 104,500	• 전자저널발간 • 편집비	110,500 285,000	
			33권 제3호	500,000	476,500	▽ 23,500	• 전자저널발간 • 편집비	110,500 366,000	
	소 계		2,000,000	1,534,000	▽ 466,000		1,534,000		
	소모임 연구회	소모임 연구회 지원	4,000,000	4,400,000	▲ 400,000	• 서울모임 지원금 • 경기모임 지원금 • 경북/충북모임 지원금 • 충남/서울모임 지원금 • 부산모임 지원금	1,000,000 1,000,000 800,000 800,000 800,000		
	30주년 기념교재 출판	교재출판 지원	-	8,000,000	▲ 8,000,000	• 책임연구자 및 집필자 인건비 • 회의비	7,500,000 500,000		
	KUSF 연구사업	과제수행 지원	-	10,000,000	▲ 10,000,000	• 연구참여자 인건비 • 연구집행비	8,500,000 1,500,000		
	소 계		4,000,000	22,400,000	18,400,000		22,400,00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예산액 (1)	2020년 결산액 (2)	결산 증감액 (2) - (1)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사업비	행사비	동계워크숍	6,500,000	-	-	-	-	코로나 19로 잠정 연기	
		하계워크숍	5,000,000	-	-	-	-	30주년 기념학술대회와 동시 개최	
		특별세미나	5,000,000	-	-	-	-	-	
		제58회 한국 체육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5,000,000	320,000	▽	4,6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 26인 무료 발표자 16인 × 20,000 	320,000	한국체육학회 참가비 이관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16,000,000	18,089,790	▲	2,089,7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사용료 자료집 및 홍보물 각종 상패 온라인 중계비 기념 영상 제작 기념품 강연료(토론자 및 사회자 포함) 참석자 간식 및 식비 준비 및 운영비 	3,086,000 1,335,440 993,900 3,520,000 1,600,000 1,794,100 2,500,000 2,260,350 1,000,000	
		정기학술대회	6,000,000	2,350,000	▽	3,6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연료 준비 및 운영비 	2,000,000 350,000	
	소 계	43,500,000	20,759,790	▽	22,740,210		20,759,790		
기타	전년도 미납금	7,000,000	2,000,000	▽	5,000,000	• 전년도 회장 대여금	2,000,000	기부금 처리	
	판공비	2,000,000	1,600,000	▽	400,000	• 각종 화환(16건)	1,600,000		
	기타잡비	1,000,000	591,000	▽	40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회계 신고 수수료 공인인증 발급 수수료 은행수수료 	440,000 110,000 41,000		
	소 계	10,000,000	4,191,000	▽	5,809,000		4,191,000		
합 계			83,130,000	66,471,740	▽	16,658,260	66,471,740		
차기 이월금			5,550,989	1,774,793	▽	3,776,196	1,774,793		
계			88,680,989	68,246,533			68,246,533		

감 사 보 고 서

2020년 회계연도 학회 업무와
사업 및 세입·세출

감 사 필 증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회계연도 학회 업무와 사업 및 세입·세출에 관한 재정 감사
결과 장부 및 증빙서류가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20년 11월 23일

한국스포츠사회학회 감사

김 옥 현



김 소 라



2021년도 사업계획(안)

1. 사업계획(안) 총괄표
2. 주요 사업내용(안)

1. 사업계획(안) 총괄표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개요	장 소	비 고
학술행사	1. 2021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동계워크숍 [주제] 스포츠사회학 페다고지 지식구조의 현재와 미래	02월 중	-	
	2. 2021년도 체육주관 국민체육진흥세미나	04월 중	-	한국체육학회 주관
	3. 2021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특별세미나	미정	-	
	4. 2021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하계워크숍 [주제] 스포츠사회학 연구방법론 특강	06월 중	-	
	5. 2021년도 88서울올림픽기념 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	08월 중	-	한국체육학회 주관
	6. 제102회 전국체전기념 학술발표회	10월 중	-	한국체육학회 주관
	7. 2021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주제] 스포츠의 미래를 묻다	11월 26일 (금)	-	
출판 간행	학회지	제34권 제1호: 2021. 03. 31 제34권 제2호: 2021. 06. 30 제34권 제3호: 2021. 09. 30 제34권 제4호: 2021. 12. 31		연 4회 발간

2. 주요 사업내용(안)

1) 학술행사

(1) 2021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동계워크숍

- ▷ 일 시 : 02월 중
- ▷ 장 소 : 미정
- ▷ 주 제 : 스포츠사회학 페다고지 지식구조의 현재와 미래

(2) 2021년도 체육주관 국민체육진흥세미나

- ▷ 주 제 : 미정
- ▷ 장 소 : 미정
- ▷ 일 시 : 미정
- ▷ 한국체육학회 주관 행사

(3) 2021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특별세미나

- ▷ 일 시 : 미정
- ▷ 장 소 : 미정
- ▷ 주 제 : 미정

(4) 2021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하계워크숍

- ▷ 일 시 : 06월 중
- ▷ 장 소 : 미정
- ▷ 주 제 : 스포츠사회학 연구방법론 특강

(5) 2021년도 88서울올림픽기념 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

- ▷ 일 시 : 미정

- ▷ 장 소 : 미정
- ▷ 주 제 : 미정
- ▷ 한국체육학회 주관 행사

(6) 제10회 전국체전기념 학술발표회

- ▷ 일 시 : 미정
- ▷ 장 소 : 미정
- ▷ 주 제 : 미정
- ▷ 한국체육학회 주관 행사

(7) 2021년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 ▷ 일 시 : 미정
- ▷ 장 소 : 미정
- ▷ 주 제 : 스포츠의 미래를 묻다

2) 주요회의

(1) 임시총회 : (회장 및 회원 요구 시 개최)

(2) 상임이사회

- ① 2021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 ▷ 일 시 : 2021년 01월 중
- ② 2021년도 제2차 상임이사회
 - ▷ 일 시 : 2021년 08월 중

(3) 정기이사회

- ①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21년 02월 중

②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 일 시 : 2021년 11월 중

2) 출판 및 간행 사업

(1) 학회지 발간

① 제34권 제1호

▷ 원고마감일 : 2020년 12월 31일

▷ 발간예정일 : 2021년 03월 31일

② 제34권 제2호

▷ 원고마감일 : 2021년 03월 31일

▷ 발간예정일 : 2021년 06월 30일

③ 제34권 제3호

▷ 원고마감일 : 2021년 06월 30일

▷ 발간예정일 : 2021년 09월 30일

④ 제34권 제4호

▷ 원고마감일 : 2021년 09월 30일

▷ 발간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

2021년도 편집위원회
사업계획(안)

2021년도 편집위원회 사업계획(안)

1) 2020년도 제8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0년 12월 중

▷ 회의내용

- ① 제33권 4호 심사진행상황 검토
- ② 제33권 4호 심사결과 및 게재가 논문 확인
- ③ 기타의 건

2) 2021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1년 01월 중

▷ 회의내용

- ① 2021년도 편집위원회 운영계획안 검토
- ② 제34권 1호 심사위원 선정
- ③ 기타의 건

3) 2021년도 제2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1년 03월 중

▷ 회의내용

- ① 제34권 1호 투고 논문 중 이의 신청 논문 심의
- ② 제34권 1호 심사결과 및 게재가 논문 확인
- ③ 기타의 건

4) 2021년도 제3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1년 04월 중

▷ 회의내용

- ① 제34권 2호 논문투고 현황 보고
- ② 제34권 2호 심사위원 선정
- ③ 기타의 건

5) 2021년도 제4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1년 06월 중

▷ 회의내용

- ① 제34권 2호 투고 논문 중 이의 신청 논문 심의
- ② 제34권 2호 심사결과 및 게재가 논문 확인
- ③ 기타의 건

6) 2021년도 제5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1년 07월 중

▷ 회의내용

- ① 제34권 3호 논문투고 현황 보고
- ② 제34권 3호 심사위원 선정
- ③ 기타의 건

7) 2021년도 제6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1년 09월 중

▷ 회의내용

- ① 제34권 3호 투고 논문 중 이의 신청 논문 심의
- ② 제34권 3호 심사결과 및 게재가 논문 확인
- ③ 기타의 건

8) 2021년도 제7차 편집위원회

▷ 일 시 : 2021년 10월 중

▷ 회의내용

- ① 제34권 4호 논문투고 현황 보고
- ② 제34권 4호 심사위원 선정
- ③ 기타의 건

2020년도 12월 예산(안)

1. 세입 · 세출 총괄표(안)
2. 세 입 예 산(안)
3. 세 출 예 산(안)

1. 세입 · 세출 총괄표(안)

2020년 11월 28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원)

세	입	세	출
전기이월금	1,774,793	세출 총액	1,765,500
세입 총액	3,801,000	차기이월금	3,810,293
계	5,575,793	계	5,575,793

2. 세입예산(안)

(단위 : 원)

관	항목		2019년 12월 결산액	2020년 12월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회 비	회원회비	통상회비	-	-	-	-	
		신입회비	-	-	-	-	
	임원회비	회장단	500,000	-	-	-	
		이 사	200,000	3,200,000	• 2020년도 이사 6인 • 2019년도 이사 10인	1,200,000 2,000,000	
	소 계		700,000	3,200,000		3,200,000	
수 익 자 부 담 금	참가비	동계워크숍	-	-	-	-	
		하계특별세미나	-	-	-	-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	-	-	-	-	
		전국체전기념 학술발표회	-	-	-	-	
		정기학술대회	1,240,000	-	-	-	
	소 계		1,240,000	-		-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결산액	2020년 12월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수익 자부담금	논문심사 및 게재료	제33권 제4호	620,000	300,000	• 게재료	300,000		
		제34권 제1호	400,000	300,000	• 심사료 6편 × 50,000	300,000		
		제34권 제2호	-	-	-	-		
		제34권 제3호	-	-	-	-		
		제34권 제4호	-	-	-	-		
	소 계		1,020,000	600,000		600,000		
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찬조금	1,690,000	-	-	-		
		지원금	경륜경정 사업본부	-	-	-	-	
			레인보우박스	-	-	-	-	
			국민체육 진흥공단	4,000,000	-	-	-	
			동의대학교 링크사업단	2,500,000	-	-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원	1,000,000	-	-	-	
	부산관광공사	1,500,000	-	-	-			
소 계		10,690,000	-		-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결산액	2020년 12월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기타	결산이자	766	1,000	• 결산이자	1,000	
	소 계		766	1,000	-	1,000	
합 계			13,650,766	3,801,000		3,801,000	
전기 이월금			282,199	1,774,793		1,774,793	
계			13,932,965	5,575,793		5,575,793	

3. 세출예산(안)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결산액	2020년 12월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항 목	금 액	
관 리 비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관리비	3,5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운영비 	-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용품비 •프린터 토너 및 인쇄비 •기타 	-	
	발송비	간행물 및 우편물	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물 및 자료집 •택배발송비용 •기타 	-	
	통신비	전화료 및 메일발송	189,910	-	•전화 사용료	-	
	유지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60,000	-	•홈페이지 도메인관리	-	
	소 계		4,399,910	-		-	
사 업 비	회의비	정기총회	-	-	-	-	
		임시총회	-	-	-	-	
		이 사 회	400,000	-	-	-	
		기타회의	-	-	-	-	
	소 계		400,000	-		-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결산액	2020년 12월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사업비	편집 위원회	회 의 비	1,280,000	1,282,500	• 정기회의	1,282,500		
		심 사 료	-	252,500	• 심사료	252,500		
		소 계	1,280,000	1,535,000		1,535,000		
	출판 및 발간비	학 회 지	33권 제1호	-	-	-	-	
			33권 제2호	-	-	-	-	
			33권 제3호	-	-	-	-	
			33권 제4호	-	230,500	• 전자저널발간 • 편집비	110,500 120,000	
	소 계	-	230,500		230,500			
	소모임 연구회	소모임 연구회 지원	-	-	-	-		
	소 계	-	-		-			
	행사비	동계워크숍	-	-	-	-		
		하계특별세미나	-	-	-	-		
		국제 스포츠과학 학술대회	-	-	-	-		
		전국채전기념 학술발표회	-	-	-	-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7,457,920	-	-	-		
소 계	7,457,920	-		-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19년 12월 결산액	2020년 12월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기 타	판공비		300,000	-	-	-	
	기타잡비		-	-	-	-	
소 계			300,000	-		-	
합 계			13,837,830	1,765,500		1,765,500	
차기 이월금			95,135	3,810,293		3,810,293	
계			13,932,965	5,575,793		5,575,793	

2021년도 예산(안)

1. 세입 · 세출 총괄표(안)
2. 세 입 예 산(안)
3. 세 출 예 산(안)

1. 세입 · 세출 총괄표(안)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원)

세	입	세	출
전기이월금	3,810,293	세출 총액	55,830,000
세입 총액	58,408,000	차기이월금	6,388,293
계	62,218,293	계	62,218,293

2. 세입예산(안)

(단위 : 원)

관	항목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목	금액	
회비	회원회비	통상회비	1,300,000	3,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회원 60인 × 50,000 ●준회원 20인 × 10,000 	3,000,000 200,000	
		신입회비	960,000	2,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회원 35인 × 60,000 ●준회원 5인 × 20,000 	2,100,000 100,000	
	임원회비	회장단	5,000,000	5,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 장 1인 × 1,000,000 ●부회장 9인 × 500,000 	1,000,000 4,500,000	
		이 사	12,000,000	14,000,000	●이 사 70인 × 200,000	14,000,000	
	소 계		19,260,000	24,900,000		24,900,000	
수익 자부 담금	참가비	동계워크숍	-	1,400,000	●등록 70명 × 20,000	1,400,000	
		특별세미나	-	1,400,000	●등록 70명 × 20,000	1,400,000	
		하계워크숍	-	1,400,000	●등록 70명 × 20,000	1,400,000	
		체육학회 학술대회	320,000	1,600,000	●등록 100명	1,600,000	한국체육학회 주관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	-	●등록 100명	-	
		정기학술대회	-	2,000,000	●등록 100명 × 20,000	2,000,000	
	소 계		320,000	7,800,000		7,800,00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수익 자부담금	논문심사 및 게재료	제34권 제4호	-	700,000	•게재료 6편	700,000	
		제35권 제1호	670,000	1,300,000	•심사료 12편 × 50,000 •게재료 6편	600,000 700,000	
		제35권 제2호	1,030,000	1,300,000	•심사료 12편 × 50,000 •게재료 6편	600,000 700,000	
		제35권 제3호	1,470,000	1,300,000	•심사료 12편 × 50,000 •게재료 6편	600,000 700,000	
		제35권 제4호	350,000	600,000	•심사료 12편 × 50,000	600,000	
	소 계		3,520,000	5,200,000		5,200,000	
기부금	기부금	찬조금	21,363,000	1,000,000	•찬조금	1,000,000	
		지원금	12,000,000	15,000,000	•광고 및 후원금	15,000,000	
	소 계		33,363,000	16,000,000		16,000,000	
및 기타	기타	연구용역	10,000,000	-	-	-	
		결산이자	5,895	8,000	•결산이자	8,000	
		누리미디어	1,682,503	4,500,000	•누리미디어 저작권료	4,500,000	
	소 계		11,688,398	4,508,000		4,508,000	
합 계			68,246,533	58,408,000		58,408,000	
전기 이월금			95,135	3,810,293		3,810,293	
계			68,341,668	62,218,293		62,218,293	

3. 세출예산(안)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항 목	금 액	
관 리 비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관리비	11,000,000	11,000,000	•인건비 1,000,000 × 11개월 •운영비	11,000,000	운영비 및 기타 내역 인건비에 포함
		사무집기 및 사무용품	-	-	•사무용품비 •인쇄비	-	
	발송비	우편 발송	150,300	50,000	•우편물 •택배발송	20,000 30,000	
	통신비	전화료 및 메일발송	226,000	300,000	•전화 사용료	300,000	
	유지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50,000	2,310,000	•홈페이지 도메인관리	2,310,000	
	소 계		12,026,300	13,660,000		13,660,000	
사 업 비	회의비	상임이사회	110,000	1,000,000	•2021년도 1차 상임이사회 •2021년도 2차 상임이사회	500,000 500,000	
		이 사 회	1,075,750	1,000,000	•2021년도 1차 정기이사회 •2021년도 2차 정기이사회	500,000 500,000	
		30주년 기념행사	1,349,900	-	-	-	
		기타	1,770,000	-	-	-	
	소 계		4,305,650	2,000,000		2,000,00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사 업 비	편집 위원회	회 의 비	252,500	1,920,000	• 19년도 8차 편집위원회	240,000	2020년 회의비 12월 정산	
					• 20년도 1차 편집위원회	240,000		
					• 20년도 2차 편집위원회	240,000		
					• 20년도 3차 편집위원회	240,000		
	• 20년도 4차 편집위원회				240,000			
	• 20년도 5차 편집위원회				240,000			
	• 20년도 6차 편집위원회				240,000			
	• 20년도 7차 편집위원회				240,000			
	심사료	1,002,500	1,350,000	• 심사료	45,000 × 10편 × 3권	1,350,000		
	기타	-	200,000	• 운영비		200,000		
	소 계		1,255,000	3,470,000		3,470,000		
	출판 및 발간비	학 회 지	34권 제4호	308,500	500,000	• 발간비	500,000	
			35권 제1호	353,500	500,000	• 발간비	500,000	
			35권 제2호	395,500	500,000	• 발간비	500,000	
35권 제3호			476,500	500,000	• 발간비	500,000		
소 계		1,534,000	2,000,000		2,000,000			
소모임 연구회지원		4,400,000	4,500,000	• 각 지역 소모임연구회 지원비	4,500,000			
30주년 기념교재 출판지원		8,000,000	-	-	-			
KUSF 과제수행 지원		10,000,000	-	-	-			
소 계		22,400,000	4,500,000		4,500,00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사업비	행사비	동계워크숍	-	6,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집 1,000,000 ●강연료 1,000,000 ●신진학자 콘테스트 1,500,000 ●준비 및 운영비 1,000,000 ●식비 2,000,000 			
		하계워크숍	-	5,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집 1,500,000 ●강연료 1,500,000 ●준비 및 운영비 1,000,000 ●식비 1,000,000 			
		특별세미나	-	5,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집 1,500,000 ●강연료 1,500,000 ●준비 및 운영비 1,000,000 ●식비 1,000,000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	-	2,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청학자 영접비 1,000,000 ●준비 및 운영비 500,000 ●식비 1,000,000 			
		전국체전기념 학술발표회	320,000	2,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 및 운영비 1,000,000 ●식비 1,500,000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18,089,790	-	-	-		
		정기학술대회	2,350,000	6,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집 1,000,000 ●강연료 2,000,000 ●준비 및 운영비 1,000,000 ●식비 2,000,000 			
		소 계	20,759,790	27,500,000		43,500,000		

[계 속]

(단위 : 원)

관	항	목	2020년 결산액	2021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항 목	금 액	
기 타	전년도 미납금		2,000,000	-	-	-	
	판공비		1,600,000	2,000,000	• 활동비 및 경조사 화환	2,000,000	
	기타잡비		591,000	700,000	• 세무회계 신고 수수료 • 기타 운영비(은행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 등)	500,000 200,000	
	소 계		4,191,000	2,700,000		2,700,000	
합 계			66,471,740	55,830,000		55,830,000	
차기 이월금			1,774,793	6,388,293		6,388,293	
계			68,246,533	62,218,293		62,218,293	

안전심의

1. 제16대 신임회장 인준의 건

: 권순용 교수 (서울대학교)

2. 감사선출의 건

3. 신임이사 인준의 건

: 김수현 교수 (남서울대학교), 이원미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4. 기타 안건

정 관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1990년 08월 18일 제정
1999년 04월 24일 1차 개정
2000년 02월 19일 2차 개정
2004년 02월 21일 3차 개정
2005년 12월 03일 4차 개정
2009년 11월 27일 5차 개정
2011년 02월 16일 6차 개정
2014년 11월 29일 7차 개정
2015년 05월 01일 8차 개정
2018년 10월 12일 9차 개정
2019년 02월 15일 10차 개정
2019년 10월 04일 1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약칭KSSS)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학회는 스포츠사회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 학술교류 증진을 장려함으로써 스포츠사회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체육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국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 4 조 (사업)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회지, 학술 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학술연구사업 수행
4. 관련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이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입회 승인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 세칙에 따른다.

1. 정회원 : 대학의 체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대학원에서 스포츠사회학과 관련된 학문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 그 외 단체에서 다년간 스포츠사회학 및 관련 분야를 지도하거나 연구한 자
2. 준회원 : 스포츠사회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학생
3.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5. 명예회원 : 스포츠 사회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2. 본 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3. 기타 본회 결의 사항의 이행

제 8 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①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자격의 상실)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0인 이내
3. 이 사 : 8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 2인

제 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해 위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3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은 취임직전 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③ 회장선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⑥ 이사와 감사는 총회가 선출한다.

⑦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회장이 제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되 선임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임은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학회지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임원은 직급에 따라 소정의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6 조 (명예회장 및 고문 및 자문위원)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서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17 조 (사무국) 이 학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회장과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고 본 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총무이사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18 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0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4 조 (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5. 제 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 25 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 15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8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 29 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의 학술지 발간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0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 (재정)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으로 생기는 과실
3. 기부금품
4. 기타수입

제 32 조 (회비) 이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되 액수는 세칙으로 규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3 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34 조 (세입·세출예산) 이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개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해산시 재산귀속) 이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학회에 기부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7 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38 조 (정관개정)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장선출 규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장선출 규정

2009년 11월 26일 제정
2015년 11월 27일 1차 개정
2018년 10월 12일 2차 개정
2019년 02월 15일 3차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제13조 3항에 규정된 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 이사회 개최일 60일 전까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본회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 ④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선거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일 45일 이전까지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① 회장의 선거권은 회장, 부회장, 이사로 한정한다.

② 회장의 피선거권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정한다.

제5조(후보등록)

회장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회장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운동)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이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금품 살포, 향응제공, 욕설과 비방을 통하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한다.
- ②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외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선거무효의 결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이 건의를 위한 위원회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회장선출)

- ① 회장은 회장선거 년도의 마지막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② 회장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③ 회장 입후보자는 투표 전 각 5분 이내의 정견발표 시간을 갖는다.

제8조(당선자 확정)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자.
-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 2위까지 2차 투표를 실시해서 과반수 득표를 한 자.
- ③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2차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를 한 자

④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찬반 투표에서 이사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를 한 자.

제9조(선거관리규정) 회장선거관리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2000년 02월 19일 제정

2002년 02월 23일 1차 개정

2004년 02월 21일 2차 개정

2005년 05월 28일 3차 개정

2017년 02월 08일 4차 개정

2019년 02월 15일 5차 개정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29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 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5-8인

제 3 조 (임기 및 선임)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에 인준을 거친다. 그 자격기준은 회원으로서 7년 이상,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편집위원으로 활발히 봉사하고 학회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을 한 후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편집위원

은 학회 회원으로서 가입 4년 이상인 자 및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 회원으로서 전공분야의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선별한다. 특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다수 게재하였거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거나 기타 탁월한 연구 업적을 지닌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은 재직기간 동안 년 1편 이상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수준의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2년 연속 연 1편 이상 발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 4 조 (업 무)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의 편집 및 출간
3. 학술지 질 향상을 위한 논의
4.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 5 조 (운 영) ① 이 위원회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매호마다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세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학회장에게 청구한다.

제 6 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마지막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편집 및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학술지에 년 1 회 게재하고,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학술지 논문 편집 및 투고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투고된 연구 논문은 별도의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에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학술지 논문심사 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논문투고 규정

2000년 02월 19일 제정

2002년 02월 23일 1차 개정

2004년 02월 21일 2차 개정

2005년 05월 28일 3차 개정

2005년 12월 03일 4차 개정

2007년 12월 23일 5차 개정

2017년 02월 08일 6차 개정

2019년 02월 05일 7차 개정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정관 제 29조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7조에 규정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학회지는 스포츠사회학에 관련된 독창성과 실효성이 있는 논문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원저(Original paper): 독창적인 연구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
2. 논평(Comment): 이미 발표된 논문에 대한 논평을 위한 것
3. 총설(Review): 스포츠사회학에 관련되는 제 분야의 총설을 게재하며,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한 어떤 특정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지식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채택

제 3 조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투고자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모두 본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간행물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제 6 조 본 학회지는 전자저널(e-journal)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논문투고는 본 학술지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www.dbpiaone.com/ksss>)에 접속하여 절차에 따라 투고한다. 단 투고 논문에는 연구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연구자의 소속, 직위 등의 저자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다.

제 8 조 논문의 첫 장 하단에 주요어를 명시해야 한다.

제 9 조 논문의 마지막 장 하단에 게재 논문에 대한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심사완료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매권 말호 끝에는 그 권에 게재된 모든 부문의 제목 및 인명색인을 게재한다.

제 11 조 논문은 투고일자 순으로 수록한다.

제 12 조 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 13 조 편집위원의 명단은 매호마다 명시하며, 편집규정과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copyright transfer form)은 매권 1호에 게재한다.

제 14 조 영문초록의 하단에 영문 Key words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매호마다 논문게재 가능 편수는 단독연구 1편, 공동연구 1편으로 제한한다.

제 16 조 논문의 게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① 논문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50,000원을 원고 투고시 납부해야 한다.
- ②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인쇄 페이지 수에 따라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논문의 게재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 1. 15페이지 이하 : 70,000원
 - 2. 16페이지 ~ 20페이지 : 1페이지 당 20,000원
 - 3. 21페이지 초과 : 1페이지 당 30,000원
- ③ 사사를 포함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1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제 17 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원고작성 규정

2000년 02월 19일 제정

2005년 05월 28일 1차 개정

2008년 04월 12일 2차 개정

2011년 01월 07일 3차 개정

2017년 02월 08일 4차 개정

논문체제

1. 논문의 작성은 다음 체제에 준한다.

1) 논문 표제,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으로 구성한다.

2) 원고 첫 장인 표제 부분은 논문 제목의 순으로 표기한다.

3) 논문의 부제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 [예: I → 1 → 1) → (1) → ①...]에 따라 표기한다.

<예시, 연구 논문의 원고작성 체제 범례>

논제

국문초록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4) 이론적 배경(혹은 관련 연구)은 간결하게 분석/요약하여 서론 부분에 포함시킨다.

5) 결과는 결과(분석) 및 논의로 결론은 논의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또는 결론 및 제언 등으로 쓸 수 있다.

2. 원고의 서식은 횡서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3. 원고 분량은 표 및 그림을 포함하여 A4 용지(210mm×297mm) 2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반드시 한글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고, 본 학술지의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jkss.jams.or.kr>)에 투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원고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분량은 A4 용지(210mm×297mm) 각 각 1매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본문에서는 가급적 외래어 표기를 피하고, 원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말 의미를 덧붙이도록 한다.

그림, 표 작성

1.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사진을 첨부할 경우 가급적 흑백용 필름을 사용해서 제출한다.
2. 표 및 그림의 제목 내용은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그림과 표 제목 및 내용에 전문 용어를 원어로 직접 표기할 경우 우리말 의미를 덧붙인다.
3. 표 및 그림 제목의 번호는 본문에서 설명을 할 경우 <표 1> 또는 <그림 1>로 괄호를 사용해서 표기하고 표와 그림에서는 표 1. 또는 그림 1. 과 같이 괄호 없이 표기한다.
4. 모든 표는 반드시 가로 선으로만 작성한다. 단, 특별한 의미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로선도 사용할 수 있다.
5.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6. 표 및 그림이 인용된 자료일 경우 표, 그림의 하단에 참고문헌 형식을 제시한다.
7. 표 및 그림에 필요한 단위는 반드시 원어로 표기한다.

수학 및 통계기호

1. 논문 작성에 사용한 원자료(raw data)는 논문이 출간된 이후 최소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본 학회에

제출한 논문 자료도 최소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치에 대한 공식 등은 논문내용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3. 통계 또는 수학적식이 새로운 것이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에 제시한다.

4. 논문에서 추리 통계치를 제시할 때는 통계치 기호와 함께 자유도, 통계치 그리고 유의수준을 같이 제시한다(이때, 유의수준의 소수점 앞에는 0을 쓰지 않는다).

서체 및 숫자

1. 통계 부호, 또는 수학의 변수로 사용된 문자는 이탤릭체로 작성한다.

<예시>

F검증, Z점수, t test, $F(1.53)=10.03$

2. 화학 용어, 삼각 함수 용어, 그리스 문자, 약어로 쓰인 문자 등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본문 중의 10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10이하의 수는 글자로 표시한다. 1,000 이상의 숫자에서는 세 자리씩 쉼표로 구분한다.

문헌이용

1. 본문에서 문헌을 이용할 때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를, 외국인은 성(family name)을 발행 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1) 다른 저자의 책, 출간된 연구물에서 인용된 자료, 검사 항목에서 따온 자료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언어적 지식 사항 등은 문자 그대로 표기한다.

2) 짧은 인용(40단어 이하)은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 부호(“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40단어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과 별도로 적고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할 때는 문단을 바꾸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5자씩 들여 쓴다.

3) 인용을 할 때 본문에는 저자, 연도 그리고 페이지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4) 저자가 단체일 경우 처음 인용을 할 때는 단체명을 모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약어로 표기한다.

2. 저자가 1명 또는 2인 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 및 홍춘희(2001)는 -----

Affonso & Lee(2001)는 -----

3. 저자가 3인 이상 6인 까지 경우 첫 인용에는 한국인은 성과 이름 전부, 외국인인 경우 성 (family name)을 전부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 전부와 등(等), 외국인은 성과 등(et al.), 연도를 표기한다.

<예시>

홍길동, 홍춘희 및 김길수(2001)는 사회현상의 ----- 첫 인용

홍길동 등(2001)은 사회현상의 ----- 반복인용

Williams, Johnes, Smith & Lee(2001)는 스포츠 사회학에서 ----- 첫 인용
Williams et al. (2001)은 스포츠 사회학에서 ----- 반복인용

4. 둘 이상의 논문이 같은 성을 가진 저자. 외국인의 경우 같은 성의 저자에 의해 같은 년도에 게재된 것이면 혼란을 막기 위하여 성과 그의 이름의 첫 글자(initial)를 써준다. 한국인은 이름의 전부를 써준다.)

<예시>

Hospitalized Stress (Volicer, K. A. 2001; Volicer, M. Y. 2001)

5. 동일한 저자의 복합인용은 연대순으로 하여 “ , “ 로 띄어 쓰고, 저자명은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국문일 경우: (이기동, 1991, 1998).

영문인 경우: (Price, 1988, 1999).

6. 같은 해에 동일 저자에 의한 한편 이상의 논문은 년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연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예시>

영문논문인 경우: (Price, 1980a , 1980b)

국문논문인 경우: (홍길동, 1980a , 1980b)

7. 본문 내용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한국인 먼저 가, 나, 다 순으로, 그 다음 외국인은 알파벳순으로 괄

호내용에 (;)를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시>

----- 에 대한 연구들(김성태, 1978; 남해구, 1997; 최경수, 2001, Brown &Smith, 1975; Lee, 1954; Williams, 1998) -----

8.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국인은 첫 저자의 이름전부와 등(等), 외국인은 성과 등(et al.), 년도를 표기한다. 참고문헌에는 전체 저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It;예시>

최영광 등(1998)은 성인병 발병에 관한 연구에서 ----- 첫 인용, 반복인용 모두

Price et al. (1987)은 만성질환 추의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 첫 인용, 반복인용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작성 원칙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 (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한다.

2. 참고문헌의 나열은 먼저 동양어 표기 문헌을 가, 나, 다 순으로, 다음에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한다. 세부 주요 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간행물 참고문헌의 표기

① 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 번호, 페이지 번호.

- 저자명은 모두 명기하고, 영문일 경우 성은 전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머리글자만으로 표시하며, 성 다음은 쉼표(“ , “)로 표시하고 저자가 2명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 를 사용한다. 출판 년도는 저자 다음에 붙여서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시>

Snyder, E. E., & Spreitzer, E. A. (1993).

김홍길, 채재관, 김경환(1994).

- 논문제목이 영문인 경우 제목과 하위제목(“ : ” 다음에 이어지는 제목)의 첫머리 글자에서만 대문자로 표시,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

- 논문제목이 국문인 경우 학술지명을 중고딕으로 표기하고, 영문인 경우 학술지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영문학술지명은 축약형(Abbreviation)이 아닌 원제 명칭으로 기재하고 명사, 대명사는 첫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 권 번호와 페이지는 각각 숫자로만 표시하되, 국문에서는 권 번호를 중고딕으로, 영문에서는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예 시>

- 김홍길(1993). 스포츠조직 지도자의 리더십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 512-530.

- Sack, A. L., & Thiel, R. (1985). College basketball and role conflict: A national survey. Sociology of Sport Journal, 2(2) 198-209.

② 신문기사

<예시 1>

홍길동(1998, 7, 20). 운동선수의 상해 실태. 조선일보, 15면.

엘리트체육의 발전 방향(1999, 9, 25). 중앙일보, 10면.

<예시 2, 저자 명기 안 된 신문기사>

New drug appears to sharply cut risk of death from heart failure(1933, July 13). The Washington Post, p. 112.

2) 단행본 참고문헌의 표시

①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저자, 편집자 : 편집된 책일 경우 국문은 저자명 뒤에 (편)으로 표시하고 영문일 경우(Ed.) 혹은 (Eds.)라는 약어로 표시.

출판년도 : 책이 발간된 년도 표시.

책 제목 : 국문일 경우 고딕, 영문일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책 제목은 명사, 대명사만 대문자로 표기. 책이 재판 이상으로 간행된 경우 책 제목 다음에 판수를 기재.

출판도시: 출판도시와 출판사 사이는 콜론(:)으로 구분.

<예시>

- 홍길동(1994). 현대사회와 스포츠. 서울: 동양출판사.

- Leonard, W. M. (1984).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2nd ed.). Minneapolis, MN: Burgess Publishing Company.

② 연구 또는 용역과제 보고서 참고문헌의 표시

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출판물 고유번호). 출판도시: 출판부서 기관명.

<예 시>

김천식(1993).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③ 석/박사논문 참고문헌의 표기

저자(논문작성 년도). 논문제목. 미간행 석사(박사)학위논문. 대학원명.

<예 시>

홍길석(1995). 주부의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3. 인용, 본문에서 참고문헌 인용

- 1) 다른 저자의 책, 출간된 연구물에서 인용된 자료, 검사 항목에서 따온 자료 그리고 피험자에 대한 언어적 지식 사항 등은 문자 그대로 표기한다.
- 2) 짧은 인용(40단어 이하)은 본문 속에 포함시키고 직접 인용 부호(“ ”)로 인용문을 표시한다. 40단어 이상의 인용문은 본문과 별도로 적고 인용부호는 생략한다. 별도로 인용문을 기술할 때는 문단을 바꾸고 왼쪽, 오른쪽을 각각 5자씩 들여 쓴다.
- 3) 인용을 할 때 본문에는 저자, 연도 그리고 페이지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완전한 출처를 제시한다.
- 4) 저자가 단체일 경우 처음 인용 때는 단체명을 모두 쓰고 그 이후부터는 약어로 표기한다.

<예시, 참고문헌에서 허용되는 축약형 용어>

Chap.	chapter
ed.	edition

Rev. ed.	revised edition
2nd ed.	second edition
Ed.(Eds.)	Editor(Editors)
Trans.	Translator(s)
n.d.	no date
p.(pp.)	page(pages)
vol.	Volume
vols.	Volumes
No.	Number
Pt.	Part
Suppl.	supplement

4. 컴퓨터(Web DB, 전자저널) 검색 정보

<예 시>

McDonald, M. G. (1999). Unnecessary Roughness: Gender and Racial Politics in Domestic Violence Media Events. *Sociology of Sport Journal*, 16(2), 111-133. Retrieved September 25, 2001, from the SSJ ARTICLE database.

Electronic reference format recommended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0, October 12). Retrieved December 12, 2000, from <http://www.apa.org/journals/webref.html>

이종영(1997). 체육학 연구와 과학의 목적. *한국체육학회보*, 18-23. 검색일 2004년 6월 26일, 웹주소 http://210.101.116.3/Search/Result_List.asp

1) 심사완료 후 게재 예정 논문

<예 시>

Zuckerman, M., &Kieffer, S. C.(in press). Race differences in face-ism: Dose facial prominence imply dominanc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논문집 부록(Journal Supplement)

<예 시>

Regier, A. A., Narrow, W. E., &Rae, D. S. (1990). The epidemiology of anxiety disorders: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ECA) experie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24(Suppl. 2), 3-14.

3) 편저서에 게재된 논문 또는 장(chapter)

<예 시>

Bjork, R. A. (1989). Retrived inhibition as an adaptive mechanism in human memory. In H. L. Roediger III &F. I. M. Crail(Eds.), Varieties of memory &consciousness(pp. 309-330). Hillsdale, NJ: Erlbaum.

4) 세미나, 학술대회,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예 시>

김경숙(2005).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 제24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전문체육인의 역할(pp. 29-56). 서울: 한국체육학회.

5) 포스터 세션 발표 자료

<예 시>

Ruby, J., &Fulton, C. (1993, June). Beyond redlining: Editing software that work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Washington, DC.

6) TV 프로그램

<예 시>

KBS Media(2000). 비만과의 전쟁(일요스페셜). 서울: KBS Media.

5. 논문편집양식(아래아 한글 2004)

	서 체	장평	자간	급수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비 고
큰제목	휴먼명조	95	-5	17p	160	-	가운데	한줄띄움
이름(소속)	휴먼고딕	95	-5	10p	160	-	가운데	한줄띄움
국문초록	휴먼고딕	95	-5	8p	150	-	혼합	
주요어	휴먼명조	95	-5	8p	160	-	혼합	
I. 제목	휴먼명조	95	-5	10p	160	10	가운데	한줄띄움

본문	휴먼명조	95	-5	9p	160	10	혼합	
1. 제목	휴먼명조	95	-5	9p	160	10	혼합	
1) 제목	휴먼명조	95	-5	9p	160	10	혼합	
그림 제목	휴먼명조	95	-5	9p	160	-	가운데	
표 제목	휴먼명조	95	-5	9p	160	-	혼합	
표 내용	휴먼명조	95	-5	9p	130	-	혼합	
참고문헌	휴먼고딕	95	-5	10p	160	-	가운데	
참고문헌내용	미국심리학회지(APA) 스타일, 홈페이지 다운로드용 예시 참고							
ABSTRACT	중고딕	95	-5	10p	160	-	가운데	
영문초록 제목	타임류로만체	95	-5	12p	160	-	가운데	
이름(소속)	중고딕	95	-5	10p	160	-	가운데	
영문초록 본문	타임류로만체	95	-5	8p	150	10	혼합	
Key words	타임류로만체	95	-5	8p	160	-	혼합	

- 용지설정: (170.0mm×240,0mm)

- 여백주기: 위쪽: 30.0, 아래쪽: 20.0, 오른쪽: 24.0, 왼쪽: 24.0 머리말: 10.0, 꼬리말: 5.0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2000년 02월 19일 제정

2002년 02월 23일 1차 개정

2005년 05월 28일 2차 개정

2008년 11월 28일 3차 개정

2011년 05월 17일 4차 개정

2017년 02월 08일 5차 개정

2019년 02월 15일 6차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이하 본회라 칭함)의 정관 제 29조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7조에 규정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이하 학회지라 칭함)의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의 종류)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원저(Original paper), 논평(Comment) 및 총설(Review)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4 조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편집위원 1인에게 심사위원 2인의 선정을 의뢰한다(심사위원 2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③ 편집위원이 논문투고 시,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임 및 심사를 의뢰한다.
- ④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한다.

제 5 조 (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심사내용의 공표)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심사결과의 종류)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재심사“ 및 “게재 불가“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제 9 조(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의 한 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분을 제출하면 편집간사가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채택한다.

1.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와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2.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3.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4.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이 인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국, 영문의 초록 체제 및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6. 연구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10 조(수정 후 재심의 판정)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 중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분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이 그 수정분을 채택하거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1. 논문 내용이 충분하기 위해 약간의 연구결과가 더 필요한 경우
2. 논문 내용이 확실하기 위해 약간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 11 조 (게재 불가의 판정)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1.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2.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4.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제 12 조(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아래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종합판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3심사와 수정후재심 일 경우에는 “수정후재심”을 제외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종합판정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수정 후 계재가	수정 후 계재가	수정 후 계재가	수정 후 계재가	수정 후 계재가
수정 후 계재가	수정 후 계재가				
계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계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계재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제3 심사(심사위원 C)	제3 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계재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제3 심사(심사위원 C)	제3 심사(심사위원 C)
재심사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재 투고)	계재불가(재 투고)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재 투고 불가)	계재불가(재 투고 불가)

심사위원 C(제3 심사) 종합판정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심사위원 C	종합판정	1인 재심사인 경우		2인 재심사인 경우	
		심사위원	종합판정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종합판정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계재가
수정후계재가	수정후계재가	수정후계재가	수정후계재가	계재가, 수정후계재가	수정후계재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수정후계재가, 수정후계재가	수정후계재가
				계재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수정후계재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계재불가

제 13 조(접수 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4 조(외국어 논문) 투고 논문은 국문으로 쓰인 것으로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 15 조(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참석한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6 조(심사논문의 반송)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 17 조(심사의견서의 발송)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 18 조(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19 조(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발행규정

2017년 02월 08일 제정

2019년 02월 15일 1차 개정

제1조(발행일)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이하 KSSS)의 발간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는 1년에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pdf)의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발행인과 편집인)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와 KSSS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

스포츠사회학회와 KSSS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게재료)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면 15페이지까지 70,00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초과시 16~20p 장당 2만원, 21p 초과 장당 3만원). 사사를 포함하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는 1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제5조(게재 순서)

제출된 원고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와 KSSS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심사완료일 순으로 한다.

제6조(논문에 대한 책임)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출판을 위한 PDF의 확인은 투고자가 직접하며, 최종 논문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제정은 이 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2007년 11월 23일 제정
2017년 02월 08일 1차 개정
2019년 02월 15일 2차 개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체육학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체육계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전문 학술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학술지의 질적 권위는 연구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심사지침의 운영에 달려 있다. 한국스포츠사회학회에서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연구자 윤리규정과 함께 투고 지침을 상세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제 1장 윤리규정

제 1조(총론)

1.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3. 논문의 종류는 원저(Original paper), 논평(Comment) 및 총설(Review)을 포함한다.
4. 선행연구,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이중 투고, 복수 출판, 부분 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 2조(연구진)

1.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5.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3조(연구방법)

1.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2.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4조(연구대상)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방법·내용·예견되는 이득 및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사 절차)

1.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며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주관적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3.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한다.

제 2장 심사지침

제6조(총론)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중립적인 자세로 원고를 평가해야 한다.
3.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원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심사절차)

1. 심사위원은 저자와 논문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없으며,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
2.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사적인 여건상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와 함께 즉시 심사 원고를 편집 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3.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8조(심사서 작성)

1. 수정 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로 쓰고,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지적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3.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4. 게재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2인(경우에 따라서는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1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5. 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제9조(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학회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10조(제목)

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 전반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지나친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부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11조(국문 영문 초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은 적용된 방법(양적, 질적)의 주요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는 연구 문제에 부합되도록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결론과 제언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국문·영문초록에서 문단 구성은 하지 않으며 영문 초록의 경우 시제와 문법적 표현 오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국문·영문초록은 한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2조(서론)

독창적이며 흥미로운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하며,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 배경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의 목적이 명확히 언급되어야 한다. 흔히 최근의 관련 연구 경향만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구문제의 학문적 경험적 발전과정도 필요에 따라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인용은 가급적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인용된 자료가 2차 자료인 경우에는 2차 자료 인용형식에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13조(연구방법)

관심 있는 독자로 하여금 기술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어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관찰 또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연구절차가 제시되어야 하며, 도구를 사용한 논문일 경우 도구의 특성(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적용된 통계적 분석방법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문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며, 연구방법(통계적 방법)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장

에게 심사를 반송해야 한다.

제14조(결과)

연구문제나 가설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결과만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질적 연구인 경우는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만을 서술한다. 양적 연구 즉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분석 결과만을 정리한다. 연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표와 그림은 실지 않는다.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의도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통계용어, 약어, 기호의 의미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약자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한다.

제15조(논의)

결과에서 얻어진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관련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또는 상반된 결과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호하거나 비논리적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연구 진행과정의 문제점 및 제한점 등도 다룰 수 있으며, 결과에서 얻어진 자료를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결론)

결론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수치를 제시하며 반복 설명하는 사례이다. 결론에서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 진술은 주어진 연구(실험) 방법(설계)의 범위 안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비실험, 유사실험, 조사 및 관찰연구에서의 인과적 결론은 이론적 근거, 비허위적 관계, 시간적 전후관계, 연관성 정도를 바탕으로 매우 신중히 진술되어야 한다. 결론은 연구 목적(문제)과 연관시켜 진술하되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안할 수 없다.

제17조(참고문헌)

참고문헌(references)은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목록에 포함된 문헌은 투고규정의 다양한 표기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연구의 충실성과 신빙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매우 철저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학회 투고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문헌들의 표기 방법은 미국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 2010)에 준한다.

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8조(구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후 위원회라 칭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학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심의 대상인 연구에 대해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투고논문의 윤리적 타당성(날조, 변조, 표절 등)
3.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실험실 안전수칙, 인체나 동물실험 시 준수수칙 등)
4. 공정한 저자표시 및 공로 배분
5. 피험자(연구참가자)로부터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
6. 피험자(연구참가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

7.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8. 제보된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
9.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21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스포츠사회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제보 및 접수)

한국스포츠사회학회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문제가 시정되지 않거나 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나 전자우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보 내용에는 논문명,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위원회는 조사에서 판정까지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종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혐의
3. 피조사자의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과 처리결과
6. 징계조치 건의 내용

제2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 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보자의 성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사, 심의, 의결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단지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에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면밀히 관련 절차를 사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을 제기한 제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27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 및 징계건의 내용을 결정한 후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장에게 경고, 학회지 논문게재 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학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연구윤리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대상이 된 연구물은 학회지에서 논문의 목록과 내용이 삭제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도 삭제되도록 조치한다.

제28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비납부 규정

회비납부 규정

2004년 02월 21일 제정
2005년 05월 28일 1차 개정
2005년 12월 03일 2차 개정
2009년 01월 31일 3차 개정
2019년 02월 15일 4차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정관 31조에 의거하여 회비의 납부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제 3 조(회비의 징수) 회원은 각 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의 회비를 납부한다.

- ① 이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가입 첫해에 다음과 같이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 : 10,000원
 2. 단체 : 50,000원
- ② 이 학회 회원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회원(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이상) : 50,000원
 2. 준회원(학부생) : 10,000원
 3. 단체회원 : 200,000원

제 4 조(임원회비) ① 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 장 : 1,000,000원
2. 부회장 : 500,000원
3. 이 사 : 200,000원

- ② 신입회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신입회비를 면제한다.
- ③ 임원은 재임기간 동안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5 조(회비의 면제) 제 3 조의 ①항과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 ① 고문
- ②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 ③ 이사회에서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회비 면제를 의결한 자

제 6 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학회 정관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 1. 이 규칙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의 해당 회계연도부터 소급 적용한다.